



발행일 2020년 01월 22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NARS 현안분석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과 개정의 필요성

정민정*

- 01 I. 서론
- 02 II.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
- 04 III. 조약 개정 사례
- 06 IV. 조약의 개정협상 현황
- 11 V. 조약 개정의 필요성
- 14 VI. 향후 과제

요약

□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유효한 양자조약의 체결건수는 2,365건, 다자조약의 체결건수는 630건임

- 지금까지 조약 개정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SOFA 일부 개정,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FTA ISDS 개정,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학교무상급식을 허용하는 WTO 개정을 들 수 있음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약 개정협상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다자간 핵군축 협상(외교부),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어업협정(해양수산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고등교육의 자격인정에 관한 협약(교육부)을 들 수 있음

□ 한국이 체결한 조약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제법 전문가들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불평등의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신중론)와 둘째, 주요 강대국과의 조약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전수조사론) 및 마지막으로 국내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조약을 선별하여 심층 분석해야 한다는 견해(선별론)가 있음

□ 향후 4대국과 체결한 양자조약을 시대별, 외교안보/경제통상/사회문화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음

- 이 때 국제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내이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처의 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02-788-4552
minjch@assembly.go.kr

I. 서론

- 한국이 체결한 조약 가운데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유효한 조약의 건수는 양자조약이 2,365건, 다자조약이 630건임
 - 대표적으로 그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SOFA)의 개정이 있었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한·미 FTA)의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학교무상급식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약 개정이 있었음
 - 현재도 외교안보 분야, 경제통상 분야, 사회문화 분야에서 조약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조약 가운데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단계의 예비조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II), 조약개정사례(III), 조약의 개정협상 관련 정부제출자료(IV), 조약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응답을 살펴본 후(V), 향후 조약개정사항의 제언을 위한 후속 과제를 검토하기로 함(VI)
-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이 체결한 조약 가운데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불충분하여 현재로서는 예비조사 결과로서의 성격이 강함
 -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II)은 외교부의 조약정보 사이트의 개별적 조약에 관한 정보를 망라하여 재구성한 내용임
 - 과거 한국의 조약 개정 사례(III)는 제18대 국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국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대표적인 조약 개정 사례를 소개하였음
 - 조약의 개정협상 관련 정부제출자료(IV)는 2019년 10월 4일에 국회입법조사처가 16개 부처에 요청한 내용을 망라한 것임(조사기간: 2019년 10월 4일~11월 28일)
 - 조약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응답(V)은 2019년 10월 3일에 국회입법조사처가 15인의 국제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요청한 내용을 망라한 것임(조사기간: 2019년 10월 3일~10월 16일)

II.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

1. 양자조약 체결건수와 체결분야

□ 한국이 체결한 양자조약의 건수는 총 2,607개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조약 건수는 2,365 건이고, 이미 종료된 조약 건수는 242건임

- 한국이 체결한 양자조약의 분야를 살펴보면, 차관 부문의 건수가 44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제/과학/기술 부문으로 301건, 제3순위로 많이 체결한 부문은 항공 부문으로 163건, 제4순위는 문화 부문으로 124건, 제5순위는 군사/안보 부문으로 120건임([표 1] 참조)
- 그 밖의 분야를 체결건수 순으로 열거하면 무상국제협력사업(120건), 조세(118건), 사증(115건), 투자보장(115건), 무역/통상(103건), 국제기구(85건), 원자력(63건), 어업(50건), 섬유(43건), 사회보장(39건), 자유무역협정(FTA)(38건), 범죄인인도(33건), 형사사법(30건), 세관(28건), 해운(25건), 공업소유권(23건), 관광(22건), 운전면허상호인정(20건), 재정(20건), 환경/자원(20건)임
- 이외에도 기타로 분류된 건수가 96건이고, 아직 분류되지 않은 건수는 68건임

[표 1] 양자조약 체결분야(체결건수 순)

2019년 10월 10일 기준

일련번호	체결분야	체결건수
1	차관	449
2	경제/과학/기술	301
3	항공	163
4	문화	124
5	군사/안보	120
6	무상국제협력	120
7	조세	118
8	사증	115
9	투자보장	115
10	무역/통상	103
11	국제기구	85
12	원자력	63
13	어업	50
14	섬유	43
15	사회보장	39
16	자유무역협정(FTA)	38
17	범죄인인도	33
18	형사사법	30
19	세관	28
20	해운	25

21	공업소유권	23
22	관광	22
23	운전면허상호인증	20
24	재정	20
25	환경/자원	20

* 그밖에도 봉사단파견(15건), 교육(13건), 조세정보(13건), 청구권(13건), 경제/무역(12건), 농업(11건), 방송/통신(11건), 영사(11건), 우편(10건), 운수소득면세(9건), 수형자이송(8건), 특권/면제(6건), 기본관계(5건), 민사사법(5건), 해난구조(5건), 교육/문화(4건), 남극(4건), 대륙붕(4건), 우주기술(4건), 건설(3건), 보건(3건), 정치/외교/우호(3건), 민간구호(2건), 청소년교류(2건)가 있음.

※ 자료: 외교부, 조약정보 사이트의 개별적 조약에 관한 정보를 망라하여 재구성.

2. 다자조약 체결건수와 체결분야

□ 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건수는 총 711건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조약 건수는 630건 이고, 이미 종료된 조약 건수는 81건임

- 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분야를 살펴보면, 우편 부문의 건수가 8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무역/통상/산업 부문으로 72건, 제3순위로 많이 체결한 부문은 해사/해양법 부문으로 56건, 제4순위는 농업/식량/1차 산품 부문으로 49건, 제5순위는 환경 부문으로 48건임([표 2] 참조)
- 그 밖의 분야를 체결건수 순으로 열거하면 방송/통신(42건), 관세(32건), 노동(31건), 국제범죄/테러(29건), 지식재산권(29건), 인권(26건), 항공/우주(25건), 금융기구(22건), 원자력(21건)임
- 다자조약의 경우 양자조약과는 달리 기타로 분류되거나 아직 분류되지 않은 조약은 없음

[표 2] 다자조약 체결분야(체결건수 순)

2019년 10월 10일 기준

일련번호	체결분야	체결건수
1	우편	85
2	무역/통상/산업	72
3	해사/해양법	56
4	농업/식량/1차산품	49
5	환경	48
6	방송/통신	42
7	관세	32
8	노동	31
9	국제범죄/테러	29
10	지식재산권	29
11	인권	26
12	항공/우주	25
13	금융기구	22
14	원자력	21

* 그밖에도 경제협력 및 개발(17건), 마약/보건(17건), 군축(15건), 전쟁/인도법(13건), 교육/문화(12건),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10건), 외교·영사관계(10건), 과학/기술(9건), 수산자원(9건), 국제사법(8건), 교통(7건), 난민/국적(5건), 분쟁해결/상사중재(3건), 이민(3건), 법률/행정(2건), 관광(1건),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1건), 안보(1건), 조약법(1건)이 있음.

※ 자료: 외교부, 조약정보 사이트의 개별적 조약에 관한 정보를 망라하여 재구성.

Ⅲ. 조약 개정 사례¹⁾

- 조약의 개정이란 이미 발효한 조약의 내용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법 규범으로는 「비엔나 조약법 협약」이 있음
 -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39조에 따르면, 조약은 개정 조항에 따른 방식에 따라 또는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조약의 개정은 국제법적으로 주권 평등과 불간섭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와 국내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인데 조약 위반의 우려 때문에 국내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함
- 지금까지 한국의 조약 개정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이하에서는 제18대 국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국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대표적인 조약 개정 사례를 소개하기로 함
-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조약 개정 사례로는 두 차례의 SOFA 개정이 있음
 - SOFA는 1966년 7월 9일 체결되었고, 1967년 2월 9일 발효하였음
 - 1991년 2월 1일 1차 개정된 SOFA 협정이 발효하였고, 2001년 4월 2일 2차 개정된 SOFA 협정이 발효하였음
 - 주한미군이 기존에 누리고 있던 공무수행과 긴밀한 연관이 없다고 보이는 특권과 면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제거·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음
 - 제1차 개정 때에는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을 폐지하고, 한국의 일차적 관할권을 확대하였으며, 한국 수사당국의 예비수사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제2차 개정 때에는 주요 범죄에 대한 기소 시 미군의 신병을 인도하게 하고, 살인, 강간과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 체포 시 계속 구금할 수 있게 하며,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표 3 | SOFA 개정 연혁

발전 경위	SOFA 제정 1966.7.9 체결, 1967.2.9 발효	⇒	제1차 SOFA 개정 1991.1.4 체결, 1991.2.1 발효	⇒	제2차 SOFA 개정 2001.1.18 체결 2001.4.2 발효
구 성	본 협정 (Agreement)		본 협정		본 협정
	합의의사록 (Agreed Minutes)		합의의사록		합의의사록 (이전 합의의사록에 추가 조항 신설)

1) 지금까지 한국의 조약 개정 사례는 제18대 국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국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대표적인 조약 개정 사례를 소개하기로 함.

	합의양해사항 (Agreed Understandings)	합의양해사항 (이전 합의양해사항 및 교환각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서)	합의 양해 사항 (이전 합의양해사항에 추가 조항 신설)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주한미군 가족 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 자료: SOFA 개정 연혁 내용을 표로 정리.

- 원칙적으로 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 안보문제,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위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음
-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이행합의의 내용만 조금씩 달라질 뿐 조약의 개정으로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음
 - 예를 들어, 2015년 주한미군이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 훈련을 위해 불활성화된 탄저균 샘플을 반입할 계획이었는데, 탄저균 생존 가능성이 있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음
 - 이 때 SOFA에서 설치한 합동위원회 차원에서의 실무적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 SOFA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경제통상 분야의 대표적인 조약 개정 사례로는 ISDS의 개정이 있음

- 2012년 론스타의 ISDS 제소를 계기로 이후에 체결하거나 개정하는 자유무역협정과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에서는 더 이상 페이퍼 컴퍼니가 ISDS를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 2019년 한·미 FTA 개정 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의 [표 4]과 같은 ISDS 개정이었음

[표 4] 투자 분야 의정서 문안의 주요 내용

의정서 문안		주요 내용
Section A (의 무)	제11.3조 각주 1) 추가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조항의 “동종의 상황” 명확화
	제11.4조제3항 추가	ISDS 등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최혜국대우 조항 원용 금지 명확화
	제11.5조제4항 추가	정부의 행위가 투자자의 기대에 불합치한다는 단순한 사실은 대우의 최소기준 위반이 아님
Section B (분쟁해결)	제11.18조제4항 추가	동일한 조치에 대한 중복제소 제한
	제11.20조제6항 두문 및 제11.20조제6항다호 내용 추가	명백히 법률상 이유가 없는 ISDS 청구를 신속절차를 통해 종료
	제11.20조제9항 추가	투자자의 입증책임 부담 명확화
Section C (정 의)	제11.28조 '비당사국의 투자자' 정의 각주 추가	구체적인 투자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설립 전 투자로 인정
부속서 부속서한	부속서 11-아 신설	투자챕터 추가 개정 근거 마련

※ 자료: 국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2018.11., p.33.

- 사회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조약 개정 사례로는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2009년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가 있음
 - 이로 인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보호정책이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IV. 조약의 개정협상 현황²⁾

1. 외교안보 분야

가. 외교부

- 외교부는 전체 조약의 국제협상을 담당하고 있어 소관 조약의 범위가 광범위함. 이 보고서에서는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다자간 핵군축 협상 현황을 언급하기로 함
 - 현재까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TBT)은 미발효,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FMCT)은 협상 미개시 상태이므로 엄밀하게는 개정협상이라 할 수 없음. 하지만 아직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을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관습국제법이 없는 가운데 이들 조약의 채택 및 발효는 기존의 관습국제법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아 개정협상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함
 - CTBT는 대기권, 외기권, 수중 및 지하에서의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군축비확산 분야의 핵심조약이나,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원자력 능력 보유 44개국 중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8개국이 미서명 또는 미비준) 96년 채택 이후 현재까지 미발효 상태임
 - 다만 매년 교대로 CTBT 발효촉진회의(홀수 해 9월) 및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짝수 해 9월)가 개최되어, CTBT 조기 발효를 위한 국제적 모멘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임
 - FMCT는 1990년 말부터 제네바군축회의(CD)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나, 이미 생산된 핵물질 포함 여부 등을 둘러싼 국가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협상이 미개시된 상태임
 - 논의의 진전을 위해 2014-15년 FMCT 유엔정부전문가그룹(GGE), 2017-18년 FMCT 고위급 전문가 준비그룹(High level Expert Preparatory Group)이 구성되어 기술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대립요소가 해소되지 않는 한 FMCT 협상 개시가 불투명한 상태임

2) 이하의 내용은 16개 부처에 국제협상 또는 국내이행 담당 조약 관련 국제협상의 진행상황과 주요 내용, 조약개정 예정사항에 대한 문의 결과를 취합하여 정리한 내용임. 2019년 10월 4일에 국회입법조사처가 16개 부처에 요청한 내용을 망라한 것으로(조사기간: 2019년 10월 4일~11월 28일), 각 정 부부처에서 개정협상이 진행 중인 조약들 가운데 향후 개정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조약을 선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임.

2. 경제통상 분야

가.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협상 및 국내이행을 담당하는 조약 가운데 하나로는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음
 - 2019년 10월 기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정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표 5] 참조)

[표 5]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정 진행 현황

국가명	서명일(개정 기준)	진행 상황
(개정) 한-체코	2018.1.12.	우리측 국회 비준동의절차 완료, 상대측 미완료
(개정) 한-아랍에미리트	2019.2.27.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완료
(개정) 한-투르크메니스탄	2019.4.17.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완료
(개정) 한-우즈베키스탄	2019.4.19.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완료
(개정) 한-싱가포르	2019.5.13.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완료
(개정) 한-스위스	2019.5.17.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완료
(개정) 한-타지키스탄	-	문안합의 완료(가서명)

※ 자료: 기획재정부, 「국제협상·국내이행 담당 조약의 국제협상 현황과 조약개정 예정사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9.

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제협상 및 국내이행을 담당하는 조약 가운데 하나로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이 있음
 - ITPGRFA에서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활용, 원활한 접근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146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한국은 2009년 4월에 가입함
 - 진행상황: 전문가 회의 개최(2019. 9.26.) → 아시아 사전회의 참석(10.8.~10.10.) →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검토회의(10.15.) → 조약 8차 총회 참석(11.11.~11.16.)
 - 총회에서는 유전자원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체제를 강화·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주요 쟁점으로는 이익공유 의무화 추진, 정기간이용권 제도³⁾ 도입, 이익공유 대상 작물 확대, 디지털서열정보 관련 사안 등이 있음

3) 정기간이용권 제도는 일정 기간을 약정해 조약 기구에 정기간이용권을 등록하면 해당 기간 이익공유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임.

다.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에서 국제협상 및 국내이행을 담당하는 조약 가운데에는 가칭 ‘한·중·일 어업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on Cooperation in Fisheries, 이하 “한·러 어업협정”)이 있음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한·중 어업협정”)이 2001년 6월 30일 발효한 이후 한·중 간에는 매년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음. 위 어업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한·중·일 어업협정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1994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라 한·중·일 3국이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을 선포(1996년: 한국·일본, 1998년: 중국)하였음
 - 새로운 EEZ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1999. 1.22 발효) 및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1회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한·일 간에는 2015년 어기(漁期) 종료(2015년 1월 20일~2016년 6월 30일) 이후 양국의 이견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여 현재는 상호입어가 중단된 상태이며, 2015년 어기 협상결과 입어규모는 860척, 68,204톤임
 - 1990년 9월 16일 한국과 구소련이 수교하면서 한·러 어업협정(1991년 10월 22일 발효)을 체결하고, 매년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어획쿼터와 조업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음 ([표 6] 참조)

표 6 | 2015년 이후 한·러 어업협상 결과

연도별	안건 및 결과
2015	1. 조업쿼터 협상 결과: 38,010톤(명태 20,500, 대구 3,750, 청어 300, 가오리 400, 꽁치 7,500, 오징어 5,500, 복어 60) 2. 조업조건: 꽁치·오징어 조업선 감독관·선도선박 운영 방식 개선, 우리 어선 유류공급(한국 유류공급선) 가능, 중국어선 조업방해 근절 방안 3. IUU 어업 방지 협정 이행: 러시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확인 방안 4. 투자협력: 러시아 나호트카 수산전용항 마스터플랜 마련 5. 과학기술 협력: 공동연구 연구자 교환기간 연장, 해양포유류 공동 연구 수행 시기 조정, 지역수산기구 관할 수역 과학옵서버 교차 승선 MOU 협의
2016	1. 조업쿼터 협상 결과: 36,000톤(명태 20,500, 대구 3,750, 청어 300, 가오리 400, 꽁치 7,500, 오징어 3,500, 복어 50) 2. 조업조건: 명태·꽁치 조업선 조업 허용기간(12.31.), 한국 유류공급선 목록 제출 방안,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 노력, 3. IUU 어업 방지 협정 이행: 양측 공동대응·지속 협력 방안 4. 과학기술 협력: 고래류 이화학 성분 분석·양식(해삼 등) 공동연구 방안, 과학옵서버 교차승선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유관기관 조율 방안

201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업쿼터 협상 결과: 36,250톤(명태 20,500, 대구 4,000, 청어 300, 가오리 400, 꽂치 7,500, 오징어 3,500, 복어 50) 2. 조업조건: 명태·꽂치 조업선 조업 허용기간(12.31. 24:00), 선박위치자동 발신장치 신규장비 추가, 오징어 선도선박 감독관 축소, 명태 체장 미달 어획비율 초과시 이동 조업, 트롤어업 해상용 전자식 저울 탑재 합의 3. 투자협력: 어분 공장 투자계획(수협중앙회)과 한국 수산기업 클러스터 추진 계획 협의 4. IUU 어업 방지 협정 이행: IUU 조업 방지협정 책임기관 지정 합의 5. 과학기술 협력: 해양무척추·포유류 이화학적 특성·생리활성물질 연구범위 확대·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북태평양수산위원회 협력 논의, 한·러 수산과학 기술협력 연례회의 개최 합의
201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업쿼터 협상 결과: 36,550톤(명태 20,500, 대구 4,200, 청어 300, 가오리 500, 꽂치 7,500, 오징어 3,500, 복어 50) 2. 조업조건: 명태·꽂치 조업선 조업 허용기간(12.31. 24:00), 선도선박 척수 위원회 매년 결정 합의, 유류공급선 목록 제출 세부내용 합의 3. 투자협력: 러 블라디보스톡·캄차카 수산투자 협력 제안 협의 4. IUU 어업 방지 협정 이행: 러시아산 새우와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스템 도입 협의 5. 과학기술 협력: 해양포유류 보호 연구수행 논의, 수산양식 분야 공동연구과제 개발 합의, 한·러 수산과학기술교류협력 연례회의 개최 합의
201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업쿼터 협상 결과: 42,470톤(명태 24,000, 대구 4,600, 청어 300, 가오리 500, 꽂치 8,000, 오징어 5,000, 복어 70) 2. 조업조건: 조업허가장 조기 발급, 선단별 통역관 배치, 선박별 해상전자 저울 설치 의무 요구 유예(오징어 조업선) 합의, 러 수역 신규입어(연해주 수역 골뱅이 조업) 검토 요구, 합의의사록 우선 적용 합의 3. 투자협력: 러 노브이미르, 코르코사프 수산투자 제안 협의 4. IUU 어업 방지 협정 이행: 러시아산 새우류와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스템 상호 시행 협의, IUU 어업방지 협력 합의 5. 과학기술 협력: 수산생물 양식 교류범위 확대·공동연구방안 논의, 무척추동물·어류·포유류 연구협력 합의, 한·러 수산과학기술교류협력 연례회의 개최 합의

※ 자료: 해양수산부, 「국제협상·국내이행 담당 조약의 국제협상 현황과 조약개정 예정사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9.

3. 사회문화 분야

가.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서 국제협상 및 국내이행을 담당하는 조약 가운데 하나로는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사회보장협정”)이 있음

- 사회보장협정의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35개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었고, 4개국과 서명하였으며(행정 약정 합의 추진 또는 협정시행 예정), 2개국과 문안을 합의(서명 절차 진행 필요)하고 있음([표 7] 참조)

[표 7]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2019.10.8. 기준

구분	국가명	
발 효 (35개국)	북 미(3)	미국, 캐나다, 퀘벡주
	중남미(3)	브라질, 칠레, 페루
	유럽(22)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루마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체코, 터키,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중 동(1)	이란
	아시아(5)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오세아니아(1)	호주
서 명 (4개국)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우루과이	
문안 합의 (2개국)	필리핀, 뉴질랜드	

※ 자료: 보건복지부, 「국제협상·국내이행 담당 조약의 국제협상 현황과 조약개정 예정사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9.

- 사회보장협정을 내용별로 구분하면 보험료 면제협정과 가입기간 합산협정이 있음
 - 한국이 10개국과 체결한 보험료 면제협정에서는 해외 파견근로자 등의 보험료 이중납부 부담을 해소하고 있음
 - 한국이 25개국과 체결한 가입기간 합산협정에서는 보험료 이중납부 부담 해소와 함께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 지급권을 개선하고 있음
- 향후 네덜란드, 이란과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임
 - 2003년 10월 1일에 발효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에 대해 네덜란드 측에서 아동수당 제한과 같은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였고, 한국은 네덜란드의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검토 중임
 - 1978년 6월 10일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mperial Government of Iran)은 일반적인 협정의 틀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다가 단순 면제에 관한 규정만 있음. 이에 한국 측에서 개정을 요구하면서 표준 문안에 따른 개정안을 송부하였음. 이란은 한국의 개정안을 검토 중임

나. 교육부

□ 교육부에서 국제협상 및 국내이행을 담당하는 조약 가운데 하나로는 ‘고등교육의 자격인정에 관한 협약’이 있음

- 지역 협약: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약 개정」(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이하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 개정”)이 2017년 12월 19일에 국내 비준이 완료된 후 2018년 2월 7일 발효되어 이행 중임
 - 학생들의 국가 간 이동성(mobility) 확대에 따른 국제 자격인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 주도로 지역별 자격인정 협약에 관한 협상이 추진되었음(1970년대 후반 ~ 1980년대 초반)
 - 1983년 12월 16일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이 채택된 후 한국은 1989년 8월 29일 수락서를 기탁하였고, 같은 날 한국에 대해 발효하였음

-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 개정이 201년 도쿄에서 채택된 후 2017년 12월 19일 국내 비준되어 2018년 2월 1일 발효되어 현재 이행 중임
- 세계 협약: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국제 협약(안)’(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임
 - 진행 경과: 유네스코 주최 정부 간 1·2차 회의 참석(2018년 12월, 2019년 3월) → 제40차 유네스코 총회 교육분과위 논의(유네스코, 2019년 11월 14일-16일) → 유네스코 전체회의에서 채택(유네스코, 2019년 11월 25일-27일)
 - 예정 일정: 최종 협약문서 회원국 통보(유네스코, 2020년 1월) → 국가별 비준 → 20개국 이상 비준 시, 협약 발효 → 각국 협약 이행
 - 향후 계획: 국내 비준을 위한 의견 수렴 → 국내 비준 여부 결정 → 비준 결정 시 필요 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유네스코에 기탁 예정(외교부, 법제처 등과 협의가 필요하며, 국내 비준 시 필요한 절차 확인 중)

V. 조약 개정의 필요성⁴⁾

1. 신중론

□ 불평등과 불합리와 같은 기준이 모호하고, 현대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한 조약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음

- 불평등, 불합리한 조약의 정의가 중요함
 - 상대국에 비해 한국이 더 나쁜 조건에서 조약을 체결한 것이 불평등,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전제할 경우, 그 기준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국이 더 나쁜 조건에서 체결한 조약이 있을지 의문임
- 특정 조약이 특정 연도에서 우리에게 보다 큰 부담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그 조약이 적용된 30-40년을 두고 보면 우리에게도 이득인 경우가 많이 있음.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그런데 그러한 득실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 조약 자체를 불합리, 불평등 조약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임
 -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조약이 불평등, 불합리한 조약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임. 조약에서 누군가는 먼저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단기간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임
 -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 조약에서 한국이 좀 더 양보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조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한 논리로 접근하면 모든 조약에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보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나뉘는데, 그러면 항상 누군가는 불합리한 조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개정을 요하는 조약의 숫자가 폭증할 것임

4) 이하의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한국이 체결한 조약 가운데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일단 모든 조약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체결하고 또 그 적용이 장기간에 이루어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상당히 주관적어서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과 국가 전체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임
 - 예를 들어 FTA나 투자협정만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이들 협정이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들 협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하여도 특정 국가와의 조약은 비난을 받는데 다른 국가와의 조약은 비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음. 유사한 조약 내용인데 국가별로 합리성, 비합리성이 나뉜다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불평등, 불합리한 조약 사례는 구한말 체결된 일련의 불평등 조약 이외에 사례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 1948년 우리 정부 수립이후 체결한 조약에서 이러한 내용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국내외 국제법 교과서에서도 조약의 무효사례 등을 설명하며 여러 불합리한 조약 체결 사례를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그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주로 옛날에 체결된 조약들을 언급하고 있음

2. 전수조사론

- 불평등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간 국력의 차이가 전제된 것이므로 시대적 구분에 따라 한일, 한미, 한중, 한러 등 4대국 중심의 조약을 외교안보/경제통상/사회문화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한 뒤 선택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

3. 선별론

- 국내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조약을 선별하여 심층 분석한 후 개정하자는 견해가 있음
 - 예를 들면, 양자조약의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FA,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을 들 수 있음
 - 다자조약의 경우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을 들 수 있음
 - 특정 조약이라기 보다는 조약에 의거하여 구현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예를 들면, 다수의 FTA와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에 규정되어 있는 ISDS를 들 수 있음
- 국내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조약개정사항을 외교안보 분야·경제통상 분야·사회문화 분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표 8] 참조)

[표 8] 조약개정이 필요한 사항 제언

일련 번호	분야	조약명	개정방향
1	외교안보	SOFA	위험물자반입 주한미군이 공중의 건강을 이유로 한국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위험물자를 반입하려는 경우 한국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
2			노무 ① 주재국의 국내노동관계법령의 적용 ② 주재국의 국내노동법상 위법·부당해고에 대한 절차적 보장
3			형사재판권 ① 한국 법관이 최종적으로 공무 여부 판단 ② 한국의 재판권 포기 규정 삭제 ③ 재판권 포기 기준에 관한 구체적 규정 마련
4			한·미 FTA, 한·EU FTA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북한의 비핵화 노력,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전제로 FTA에 개성공단 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또는 역외가공 인정에 대한 합의 내용 포함
5	경제통상	1990년대 이전 체결 BIT	발전된 투자규범 반영 ① 페이퍼 컴퍼니의 ISDS 남소 방지 ② 상대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공공정책 재량권 확보 ③ 국내법상 불법인 투자를 ISDS 보호대상에서 제외 ④ 한국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의 조약 쇼핑 예방 ⑤ 한국에의 투자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투자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설립 전 투자로 인정
6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부문 추가 개방 2015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개방
7		한·미 FTA	2019년 1월 1일 발효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의 미반영 사항 반영 ① 무역구제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호 장치의 도입 ② 원산지 확인절차의 개선 및 현실화 ③ 실질적인 서비스 시장 진출의 보장 ④ 중소기업의 지원 등 정당한 정부지원에 관한 정책권한 확보 ⑤ 금융위기 극복에 관한 예외조항의 도입 ⑥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정부의 정책권한 확보 ⑦ 미국 측 비관세장벽 조치의 적시 및 해결
8		FTA	중소기업·상인 보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제도(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관한 구체적 예외, 유보, 적용배제 규정
9	사회문화	WTO TRIPs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자동차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의 적용범위가 수리 부품에 한정되고, 산업 디자인 권리자의 생산, 판매 및 수입할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자동차의 수리를 위한 목적에 한정되는 경우 WTO 회원국이 수리부품 디자인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
10		한·중 FTA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절차적 메커니즘 구축 ① 환경과 무역 위원회에서 양국 간 자문 및 정보 교환 뿐 아니라 양국의 경제발전 정도를 반영한 구속력 있는 환경기준 설정할 수 있게 함 ② 양국의 환경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체제 설계 ③ 환경 문제에 대한 FTA 분쟁해결절차의 활용 ④ 시민사회의 참여 제도 설계

※ 자료: 전문가들 응답 내용과 관련 문헌을 표로 정리.

VI. 향후 과제

- 한국이 체결한 조약 가운데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하여 조약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언하기 위해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II), 조약의 개정협상 현황 관련 정부제출자료(IV), 조약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응답(V)을 참고하여 도출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단기적으로는 현재 국제협상이 진행 중인 조약 중심으로 국익 차원에서 개정이 요망되는 사항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시대별로 구분한 전수조사, 4대국과 체결한 양자조약 전수조사, 외교안보/경제통상/사회문화로 구분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수조사와 함께 조약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결과, 현안분석결과 또는 전문가 자문에 기초하여 불평등한 조약 및 제도를 선별하여 심층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조약 개정을 위해서는 외교부와 국내이행 담당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외교부뿐 아니라 전 정부 부처로부터 국제협상의 진행상황과 주요 내용, 조약개정 예정사항 등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조약 관련 국제협상에는 외교부와 국내이행 담당 부처가 협상 대표자로 참석하고 있으며, 조약 관련 국제협상은 조약의 개정 뿐 아니라 조약의 국내이행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약의 국내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지므로 국내이행 담당부서를 소홀히 할 수 없음
 - 현재 외교부의 조약 분류도 조약의 국내이행 담당 부서를 염두에 두고 조약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임
 - 16개 부처 가운데 통일부는 유일하게 국제협상 또는 국내이행 담당 조약이 없는 부처임. 하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남북합의서도 특수조약으로 보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함
 - 종료된 조약(양자조약 242건, 다자조약 81건) 가운데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미 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양자조약 가운데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조약(68건)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분류 작업이 필요함

참고문헌

- * 정인섭, 「조약법 강의」, 서울: 박영사, 2016.
- * Anthony Aust,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 국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2018.11.
- * 기획재정부, 「국제협상·국내이행 담당 조약의 국제협상 현황과 조약개정 예정사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9.
- * 해양수산부, 「국제협상·국내이행 담당 조약의 국제협상 현황과 조약개정 예정사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9.
- * 보건복지부, 「국제협상·국내이행 담당 조약의 국제협상 현황과 조약개정 예정사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9.
- * 외교부, 조약정보 사이트.

R E P O R T · L I S T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113호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과제	2020.1.17	백상준
제11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2020.1.15	권성훈
제111호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 분석 및 개선과제	2019.12.31.	김도희
제110호	한국의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관행의 특수성과 개선방향	2019.12.31.	정민정
제109호	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및 개선과제	2019.12.31.	구세주
제108호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2019.12.31.	김주경 정준화
제107호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2019.12.31.	황현영
제106호	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2019.12.31.	문은희
제105호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2019.12.31.	김예경
제104호	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	2019.12.31.	조인식
제103호	우리나라 경제특구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2019.12.31.	김민창
제102호	사법행정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2019.12.31.	백상준
제101호	노동이사제의 공공부문 도입 현황과 공공기관 도입 논의	2019.12.31.	김재환
제100호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 통치관료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2019.12.31.	이승열
제99호	스마트법원 4.0의 입법과제 - 예금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2019.12.31.	박준모
제98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1)	2019.12.31.	박재영
제97호	행정형 조정절차에 있어 조정성립의 효력에 관한 입법론적 방향성과 기준의 제시	2019.12.30.	박준모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96호	EU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및 시사점	2019.12.30.	박연수
제95호	스마트팜 확산·보급 사업 현황과 과제	2019.12.30.	장영주 김태우
제94호	프랑스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현황과 시사점	2019.12.30.	박충렬
제93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폐지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2019.12.27.	박준모
제92호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과 개선과제	2019.12.27.	류영아
제91호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산업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2019.12.26.	최진웅
제90호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2019.12.20.	김여라
제89호	스마트 양산산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19.12.19.	유제범
제88호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2019.12.17.	배재현
제87호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2019.12.16.	신용우
제86호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의 유해성 및 제도 개선 방안	2019.12.12.	이동영
제85호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2019.12.11.	최미경
제84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별 대응의 개선방안	2019.12.4.	조서연
제83호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운전면허 제재 관련 미국 사례 분석	2019.12.2.	허민숙
제82호	강사법(개정「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2019.11.22.	조인식
제81호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2019.11.21.	유의정
제80호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2019.11.18.	박선권
제79호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2019.11.7.	김예성

제114호

NARS

현안분석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과
개정 필요성

